

##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지침

제정 : 2012.03.23

최근개정 : 2026.0128

### 제 1 조 (목적)

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지침(이하 “지침”이라 한다)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 25 조 및 관련조항에 따라 신한펀드파트너스(이하 “회사”라 함)가 준수하여야 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 2 조 (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)

- ① 회사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개인 영상정보를 수집하고, 이와 같은 설치목적에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, 개인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한다.
- ② 회사는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며,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,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한다.

### 제 3 조(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)

회사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 25 조 제 1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 한다.

- 화재예방
- 시설안전관리

### 제 4 조(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)

회사는 아래와 같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한다.

구분	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	설치 대수
본사	회사 출입구 및 복도, 통신실	15대
전주사무실	회사 출입구, 통신실	2대

### 제 5 조(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)

- ①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와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.

구분	이름	직위	소속	연락처
개인영상정보보 호책임자	전유영	이사대우	ICT운영부	sa_ict@shinhan.com
개인영상정보보 호관리자	곽병아	수석	ICT 운영부	02-2180-0679 bakwak_fp@shinhan.com

②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는 회사의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
1.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
2.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
3.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
4.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남용·오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프로세스의 구축
5.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
6.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·감독
7.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

③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를 최소화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운영한다.

<b>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</b>	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 개인영상정보보호관리자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자
---------------------	---

## 제 6 조(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)

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.

구분	현황
촬영시간	24시간(정전 및 기타 정비를 위한 시간 제외)
보관기간	촬영일로부터 약 60일
보관장소	통신실
처리방법	1. 영상정보의 보관은 녹화장치(DVR) 하드디스크에 보관 2. 저장된 화상정보는 녹화장치(DVR) 저장용량 및 보관기간(60일 주기)에 따라 자동 삭제

### 제 7 조(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)

- ① 회사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에 의하여 전송 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·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, 제 5 조(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)에 따라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·재생할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다. 단, 열람·재생의 필요가 있을 경우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개인영상정보는 개인영상정보보호관리자에게 연락 후 개인영상정보보호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.

### 제 8 조(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)

- ① 정보주체는 회사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존재확인을 회사에 요구(청구)할 수 있다.
- ②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존재확인을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에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.
- ③ 정보주체의 열람 및 존재확인을 요구할 때 회사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, 이 때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를 한 정보주체는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임을 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·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아래와 같은 경우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, 10 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한다.
  1.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2.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  3.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- ⑤ 정보주체는 회사에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 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. 단, 정보주체가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 정보에 대하여만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.
- ⑥ 회사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청 및 제공 내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### 제 9 조(개인영상정보 안전성 확보조치)

회사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한다.

- ① 회사는 설치 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는 설치를 제한하여야 한다.
- ②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개인영상정보가 열람·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 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 및 열람·재생을 통제하여야 한다.
- ③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에 의하여 수집·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 및 업무담당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.
- ④ 회사는 관리책임자의 전보, 퇴직 등 인사이동 사유가 발생하여 접근권한이 변경된 경우에 는 지체 없이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.
- ⑤ 회사는 개인영상정보의 위·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관리 및 운영 현황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⑥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, 생성장소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, 비밀번호 설정 등 암호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⑦ 회사는 설치목적 범위를 넘은 카메라의 임의 조작을 금지하여야 한다.
- ⑧ 회사는 정보주체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 설치·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 음과 같이 안내판을 설치·운영하고 있다.
  1. 안내판은 촬영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 할 수 있게 설치한다.
  2. 회사에는 다수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가 설치되어 있어 회사 전체가 고정형 영상정 보기기 설치 지역임을 명시하여 안내판을 출입구에 부착한다.

## 제 10 조 (영상정보의 관리)

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 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.

1.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
2.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의 명칭
3.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
4.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
5.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
6.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

## 제 11 조 (보관 및 파기)

- ① 회사는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지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. 단, 회사의 운영 및 사건, 사고 등의 처리를 위하여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만 파기하지 않고 별도 관리할 수 있다.
- ② 개인영상정보는 아래와 같이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한다. 단, 하드디스크 불량 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완전 파기 시까지 별도로 보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  - 1. 저장된 영상정보는 녹화장치(DVR) 저장용량에 따라 자동 삭제
  - 2.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(사진 등) 등은 파쇄 또는 소각
- ③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「개인영상정보 파기대장」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  - 1.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항목(날짜 및 시간)
  - 2. 개인영상정보 파기 일시
  - 3.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
- ④ 개인영상정보보호관리자는 개인영상정보 파기 여부 및 이력을 매월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 12 조 (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지침의 고지에 관한 사항)**

회사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지침은 회사 내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.

**제 13 조 (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지침 변경)**

- ① 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지침은 2026.01.28 부터 적용됩니다.
- ② 이전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지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  - 2012.03.26 제정 및 시행
  - 2012.03.26 ~ 2014.05.08 적용
  - 2014.05.08 ~ 2015.04.06 적용
  - 2015.04.06 ~ 2017.04.28 적용
  - 2017.04.28 ~ 2018.05.08 적용
  - 2018.05.08 ~ 2019.04.10 적용
  - 2019.04.10 ~ 2019.09.02 적용
  - 2019.09.02 ~ 2020.07.28 적용
  - 2020.07.28 ~ 2021.01.06 적용
  - 2021.01.06 ~ 2021.05.18 적용

- 2021.05.18 ~ 2022.01.01 적용
- 2022.01.01 ~ 2022.02.16 적용
- 2022.02.16 ~ 2022.06.13 적용
- 2022.06.13 ~ 2022.06.27 적용
- 2022.06.27 ~ 2022.12.06 적용
- 2022.12.06 ~ 2023.01.12 적용
- 2023.01.12 ~ 2023.04.03 적용
- 2023.04.03 ~ 2023.05.12 적용
- 2023.05.12 ~ 2023.11.15 적용
- 2023.11.15 ~ 2024.01.03 적용
- 2024.01.03 ~ 2024.07.23 적용
- 2024.07.23 ~ 2025.01.17 적용
- 2025.01.17 ~ 2025.06.16 적용
- 2025.06.16 ~ 2026.01.28 적용